

2016년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중부지방국세청
NTS Jungbu Regional Office



목 차



금년도 법인세 신고 방향



그간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신고 시 꼭 참고해야 할 사항



금년도 주요 개정세법 내용



부탁 말씀



I 금년도 법인세 신고 방향

1. 기본방향
2. 성실신고 지원 내용

1. 금년도 법인세 신고 방향

사전 안내 강화

- 세무사회·사업자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전 안내 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안내 자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안내 항목 : ('16년) 35종 → ('17년) 67종
 - 안내 인원 : ('16년) 3.3만개 → ('17년) 5.1만개

신고도움서비스 개 선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2.27 개통,**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 사항 한눈에 확인
- **안내방법 개선과 문구 순화**

맞춤형 절세팁 제공

-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업종·규모 등 개별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요건 등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개
별
안
내

내 용		안내방법
개별 분석자료 (7.3만개 법인)	○ 상품권 변칙거래, 허위인건비 계상 등 - 탈루가 빈번한 25개 유형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자체 분석자료 (0.6만개 법인)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청 자체 발굴 사항 - 계열사간 용역거래, 주주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계상	
취약분야 분석자료 (4.3만개 법인)	○ 이월 결손금 과다공제, 부동산 양도 비영리법인 등 - 취약·문제점 과다 25개 분야	
업종별 안내자료 (9만개 법인)	○ 업종별 공통 탈루·주요 적출 사항 - 건설·제약·여행 등 100개 업종	
맞춤형 안내자료 (0.4만개 법인)	○ 조사·사후검증 추정내역 ○ 성실납세협약법인 진단과정에서 확인된 업계 공통 사항	
맞춤형 절세 Tip (15만개 법인)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 안내 - 중견·중소기업 대상 8개 항목	

회
계
안
내

	내 용	안내방법
주요 사후검증 항목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증빙 미수취,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 주요 탈루 유형 35개 항목 예고 	보도참고자료 신고안내 책자 홈페이지
자기검증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 - 실수하기 쉬운 분야 검토서 제공(8종→10종) 	
신고 시 참고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관련 주요 해석·판례 ○ 주요 세법 개정사항 ○ 공제·감면 적용시 유의할 사항 	
세무대리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업체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주요 사후검증 항목 예고 ○ 주요 해석사례, 개정세법 등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간담회
납세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신고 안내문 일괄 발송 - 신고대상(21만개) 전체 법인 	우 편

II 그간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1. 사전성실신고에 집중 하는 이유
2. 사전 성실신고 지원 현황
3. 사전 지원 사례
4. 향후 추진 방향

II. 그간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집중하는 이유

-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산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신고 시 유용한 자료를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여 **신고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 집중



- 기존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적인 검증' 방식**에서 **'14년부터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전환

구 분	'13년 이전	'14년 이후
국세청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사후검증에 중점	사전 지원에 집중,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납세자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신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증·세무조사 시 해명 자료 제출로 납세협력비용 가중 ▶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협력비용·가산세 부담 해소 ▶ 자기검증 기회 제공으로 성실 납세 수준 향상

연도별 자료제공 현황

<중부지방국세청>

구 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안내자료 종류 (종)	2014	12	-	5
	2015	28	88	19
	2016	35	107	30
	2017	67	40	-
안내받은 납세자수 (명)	2014	5,250	-	5,112
	2015	23,430	310,213	235,423
	2016	33,378	401,433	199,426
	2017	51,425	203,229	-

* 부가가치세는 '14.2기 확정부터 사전 지원 시작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 ▶ '16년부터 홈택스에 기본사항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 내용을 제공해 주는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 ▶ '17년에는 전산·개별 분석자료·사후검증·세무조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 안내자료 확대

구 분	안 내 항 목
전산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요건 충족 여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시근로자 감소)
개별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 해외시장개척비 부당 회계처리 여부 검토
자주 적출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 접대성 경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인건비
맞춤형 절세 Tip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 감면 요건 검토 안내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8종→1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 •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

사전지원 사례

- ▶ **(신용카드 사적사용)**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을 통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표이사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발췌하여 법인세 신고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제공**
 - 추후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담 해소
- * 신변잡화·가정용품·구입액·업무무관업소 이용액·개인적 치료비용 등
- ▶ **(상품권 구입)** 상품권을 거래처 지급 또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법인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실제 사용 내역에 맞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

- ▶ **(특수관계인 대여금)**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사후검증시 지적
 - 직전연도 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을 **전산분석으로 발체하여 신고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 **(R&D세액공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이후 비용은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취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전체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사업연도 중 연구소 등록이 **취소된 법인 명단을 확보하여 신고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취소 사실 미확인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잘못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적 사용한 사례

	사후검증 · 조사 지적 시	사전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신고 시 반영한 경우
세법에 의한 정상적인 부담세액	10	10
추가부담세액 (가산세)	2	'0'
총부담세액	12	10

사전지원 내용 신고반영 시 가산세 (2)만큼 세부담 감소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

- 더불어, 납세자·세무대리인 등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공 자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납세자들이 편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



III 신고 시 꼭 참고해야 할 사항

1.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2. 사후검증·세무조사 시 자주 과세되는 사례
3.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예정 항목(35개)
4. 자기검증용 검토서 (10종)
5.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할 사항
6. 공익법인 신고 안내

3-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란?

- 2. 27.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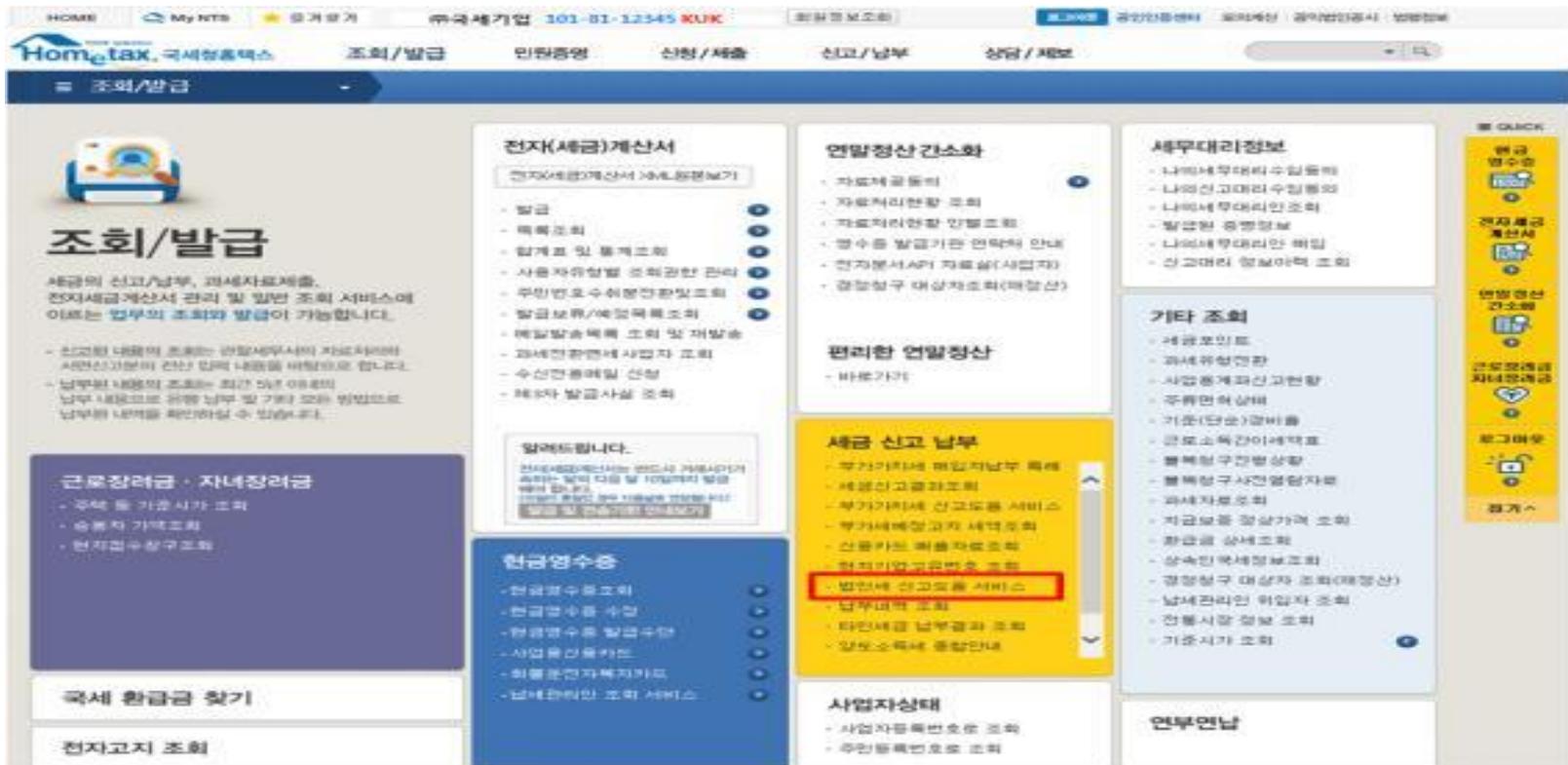
■ 제공자료

- (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 **(절세 Tip) 공제 · 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01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02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3-2. 사후검증 · 세무조사 시 자주 과세되는 사례

01 성실납세 협약 세무진단

자기주식취득가액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 취득 시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미환류소득 세액계산 시 법인세액 과다계상한 사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인 법인세액**은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이 아닌 **법인세 신고서 상 총부담세액**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사업연도 R&D 세액공제 금액

증가분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계산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01 성실납세 협약 세무진단

감면 적용된 로열티 관련 외국납부세액 과다 계상한 사례

국외원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면제·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면제·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외국납부공제세액 산출하여야 함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 담보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음식업 법인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적용

음식점업 시설장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01 성실납세 협약 세무진단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과다계상

파견 직원이 **국내모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안분**계산하여 모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하여야 함

유가증권인수비용

지분 인수· 유가증권의 인수·양도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임원퇴직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한도 초과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 16.1.1.이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폐지됨

02 사후검증

실제 지출 없이 원가를 계상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인건비, 거래사실 없는 외주비 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 사용분 경비 계상한 사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

R&D 세액공제 부당공제한 사례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 시 가점 획득을 위해 R&D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

02 사후검증

가지급금 인정이자 시가 기준 임의변경한 사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 하여야 하나 임의 변경

고용창출세액 투자세액 공제 과세 사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한 사례

- * 1년미만의 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

02 사후검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시 참고할 사항

1) '16년 소기업 판단 시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 차등** 적용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이하

2) 수도권(경기·인천) 소재 기업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초과하는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루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하여 농지 등을 불법 거래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탈루

03 세무조사

여비교통비 손금 부인한 사례

- 1)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
- 2) 임원들이게 **증빙없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
- 3)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여비교통비

인건비 손금 부인한 사례

- 1)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주주에게 지급한 인건비
- 2)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 **지급규정 없는** 임원 상여금 지급분
- 4) **관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03 세무조사

지급수수료 손금 부인한 사례

- 1) 대표자 **사적 사용 분** 지급수수료 계상 분
- 2) 전기 지급한 수수료 **선급 비용으로 기 계상 후 당기에 중복 계상**한 사례
- 3) 국고보조금 반환 **미확정분을 손금계상**한 사례
- 4) 관계사간 **공통경비 초과** 부담액
- 5) **위탁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변상금 대납액
- 6) 특허권·건물 취득 관련 부대비용(**자산계정에 해당**)
- 7)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수출 관련 지급수수료 계상분
- 8)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 자문 수수료

3-3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예정항목

01 원가 과다 계상

-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 계상 적정 여부
 -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성형외과·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01 원가 과다 계상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에 포함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01 원가 과다 계상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비용 손금부인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01 원가 과다 계상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등

0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 세액

- 8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6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0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세액

-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6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5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0)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03 외국납부세액 공제

1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03 외국납부세액 공제

1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03 외국납부세액 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04 특수관계자 거래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한 경우 해당 대손금은 손금부인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04 특수관계자 거래

15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16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05 손익 귀속 시기

17)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 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18)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05 손익 귀속 시기

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06 부동산 양도 차익

- 2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06 부동산 양도 차익

- 2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0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3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24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0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5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0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6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전용실시권료, 통상 실시권료) 또는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08 합병·분할

27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08 합병·분할

- 28)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2014.2.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09 비영리 법인

2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09 비영리 법인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 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 $[(①+②+③)-④]$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09 비영리 법인

3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10기 타

3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10기 타

33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34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10 기 타

35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3-4 자기검증용 검토서 서식(10종)

자기 검증용 검토서 서식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5. 중소기업 요건 검토 서식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서식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사항 검토서식

* 자기검증 검토서식 제출시 **사후검증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서식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⑨수취 제외대상금액	⑩차이 (③-④-⑨)	비고
①코드	② 과목 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⑧)	⑤신용 카드	⑥현금 영수증	⑦세금 계산서	⑧계산서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⑳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⑭-⑮-⑳)	비고
⑫코드	⑬ 과목 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㉑)	⑯신용 카드	⑰현금 영수증	⑱세금 계산서	㉑계산서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	비고
구분	코드	과목 명	금액	계 (+++)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소 계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여부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해당여부 단 인정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경우(법인칙 44)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 단, 법령 89 ③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3년간 계속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가지급금 인정이사	○ 적정 인정이사 익금산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인세법 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서식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여부
대차대조표 등 계상 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 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 상 임차료, 지급 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크 중 이자상당액 등	

이 하 생 략

서식5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 규모기준	○ 매출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예	아니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예	아니요
졸업기준	○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예	아니요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이 지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 다른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 매출액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서식6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공제 대상	연구 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예	아니요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 정부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공제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요

서식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 여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 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연구소 상시근무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인건비 해당 여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서식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 1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투자대상 자산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의 사업용자산과 다음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이 하 생 략

서식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7조1항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이 하 생 략

서식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한도 초과액 계산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요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요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요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예	아니요
조세 조약 적용	국가별 소득별 부담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	예	아니요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기타 적용 요건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예	아니요

3-5. 해외진출기업이 참고할 사항

해외 현지기업 자료 제출

-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 * 미(거짓) 제출 시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출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지급보증 정상요율 조회

-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용역제공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조회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31)888-4958)에 문의

3-6. 공익법인 신고 안내

01 공익법인의 의무

■ 출연재산 보고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3.31까지)
 -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로 전자제출 가능
- 제출해야 할 서류
 -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자산 5억 이상 or 수입금액,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 3)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 4)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 결산서류 공시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 2.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

02 공익법인 지원 내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



02 공익법인 지원 내용

의무 이행여부 조회 서비스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자동팝업)
- *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02 공익법인 지원 내용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 운영

-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공익사업 관련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 전문상담팀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1)888-4854~5)
- 3월중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지역내 주무관청,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
 - * 공익법인 세무안내 관련 안내자료 제공

IV 금년도 주요 개정세법 내용

IV. 주요 세법개정 사항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원 칙 (80%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의 80%로 설정

○ 예 외(100%한도)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5.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제외되는 업종 법령§50의2 참조)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례 내용	손금 인정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손금 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액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사업연도에 해당 800만원을 한도 로 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

특 례 내 용	강 제 감가상각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정액법 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 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
	처분손실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손 금 불산입액	사적사용 이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의 손금을 부인 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강제감가상각은 '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요건 조정

1.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3.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2018년 까지 연장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12.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요건 조정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 **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5% 소유한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6.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4.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4.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 6. 30. 현재 비정규직을 '16.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 원)

6.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18년 까지 **연장**
 -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 까지 **연장**
 -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4.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7.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

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 *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70%→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40%
 -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7년형 감면 40%, 5년형 감면 30%

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우대**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5.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8년 까지 **연장**
 - 핵심분야 R&D을 지속적으로 지원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2018년 까지 연장
 -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2018년 까지 연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

6.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 **확대**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17. 12. 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 (15일 이내 0.2%)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4.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7.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3.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7.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1.8%로 인하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7.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7.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8년 까지 연장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성장잠재력 활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연구개발 특구 조성 지원)
-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연장(부실기업개선)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어) 육성)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

-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8.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 (2017년 이후)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법법§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3.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부터 발급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종이) 계산서를 발급 시 1%]
 -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1(미전송 0.3)
4.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9.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징 예외 사유 추가**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지속
 - * 2016.2.12.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

3.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 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 * 과세특례 :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4. 과세 특례 연장 및 일몰 **연장**(2018년 까지)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총당
 -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 * (모회사)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
 -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 (**증여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산입**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간(특수관계자 제외) 주식교환]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6. **합병에 따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 **자산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 기준 **부채비율의 증가**, 자회사 미양도, 주식교환 후 5년내 동일업종 영위 또는 주식 재취득, 기한내 사업용고정자산 **미취득** 등



V 부탁 말씀

V 부 탁 말 씀

신고도움 서비스 조기 열람

- ▶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한층 개선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2.27에 개통
- ▶ 3.17까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 ▶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4.10 까지 PDF 파일로 홈택스에서 제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PDF 파일 게재

-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 자료실

간담회 자료 파일 제공

-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간담회 자료

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신고 관련 일반적 사항

☎ 031) 888-4833~4

공제 · 감면 전담 안내

☎ 031) 888-4841~3

공익법인 신고 안내

☎ 031) 888-4854~5

해외진출기업 신고 안내

☎ 031) 888-4953~6

